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0. 12. 2.(수) 10:00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23.

나. 발 의 자 : 나영민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나영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과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민국 재향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김천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김천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김천시 재향경우회 추진 사업과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회 회원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범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회 회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 나. 제출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김천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여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설치년도 : 2021년 1월 1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 일반회계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 적립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㉑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㉒=㉓+㉑	비 고
	수입㉓	지출㉔	증감 ㉕=㉓-㉔		
0	15,614,600	0	15,614,600	15,614,600	

• 재원조성

- 통합계정 : 각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재정안정화계정 :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 초과 시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10% 초과 시 초과분의 10% 적립

• 용 도

- 통합계정 : 각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재정안정화계정 : 세입액(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사업, 시유재산 확보, 지방채 상환 등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항 / 목	'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54,6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수금 수입	15,460,000			
수 입 합 계		15,614,600			

• 지출계획

(단위:천원)

세 부	편 성 목	금 액	비 고
보전지출 (통합기금)	예치금	15,614,600	
지 출 합 계		15,614,6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및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여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새로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기금으로써,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재원인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154억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460만원을 합한 156억 1,460만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려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나. 제출자 : 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총무새마을과장)

가.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자 의회의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업명 :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 사업기간 : 5개년(2021년~2025년)
- 시범마을 : 인도네시아 수방(Subang)시
- 출연금 : 150백만원

※ 소요예산 : 총750백만원(총 5년간 150백만원 출연)

○ 출연 및 사업시행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사업내용 :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 2016~2020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참여 현황

○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현황 및 주요사업

- 마을 현황

행정지명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수방시 탄중왕이마을 Tanjungwangi, Subang, Jawa Barat, Indonesia
인구 및 가구	7,488명(2,420가구)
주요 생산물	쌀, 옥수수, 땅콩, 파인애플 등

- 주요사업 : 주민소득증대사업(양어 사료 가공공장 건립 및 판매 사업 등), 생활환경정비사업(분리수거대 설치 등), 주민교육 사업(새마을교육, 여성교육, 농업교육, 한글교육 등), 마을안길 정비 사업

○ 사업 추진실적

- 새마을 다목적 회관 준공(2017. 11. 29.)

- 양어사료 가공 공장 준공(2019. 08. 29.)

- 주민 교육사업 실시(새마을 교육, 여성교육, 농업 교육 등)

- 탄중왕이 마을내 분리수거통(194세트) 설치, 재활용품 집하장(분리수거장) 1개소(3m × 5m) 설치, 쓰레기 수거차량 운영

※ 수방시 국민개발운동 프로그램 환경 캠페인 모범 마을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원, 총 7억 5천만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이며, 당초 인도네시아 수방시의 판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 국민개발운동 프로그램 환경 캠페인 모범 마을’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둠.
-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나. 제출자 : 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체육지원 및 관리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진흥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전문체육 지원대상 사업: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등

- 생활체육 지원대상 사업: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등
- 장애인체육 지원대상 사업: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등

○ 시체육회 등 운영지원 근거 및 감독기능 강화(안 제7조)

- 인건비·운영비 보조 근거 규정 명문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 보조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인건비·운영비에 변동 발생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전용카드의 사용,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사항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체육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전문·생활·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에서 김천시 체육회에 보조하는 인건비·운영비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을 시장이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과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체육단체에 대해 시장이 지도·감독 및 감사하고 그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시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단체 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예산의 투명성 및 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확보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

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강좌 육성·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천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 나. 제출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가치 향상, 지역 축구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 적 :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스포츠특화 도시 위상제고 및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

○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출연 기관	출 연 금	사 업 명
(사)김천시민프로축구단	2,000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 연고지 협약 기간 : 2021.1.1. ~ 2024.12.31.(4년 간), 향후 1년씩 연장

○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0. 2. :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2020. 4. 17 :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 2020. 5. 22 : 유치의향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출
- 2020. 6. 2 :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시민 공청회 개최
- 2020. 7. 10 : 김천시⇔국군체육부대 연고지 협약 체결
- 2020. 10. 22 :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설립
- 2020. 11. 30 : 김천시⇔프로축구연맹⇔체육부대 간 운영 협약식
- 2021. 1월 중 :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출범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 출연금 지원은 연고지 협약 기간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계획되어있으며, 향후 1년씩 협약을 연장할 것으로 파악됨.

- 김천으로 연고지를 옮겨 새롭게 시작하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스포츠평화도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 나. 제출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정보기획과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보조건의 입장을 제한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 보장 근거 신설(안 제8조제1항제4호)
 - 기존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관람이 금지 되었으나, ‘보조건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건의 입장을 제한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4호에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라는 관람제외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음.
- 본 일부개정안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소를 정비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사람”을 “사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u>사람</u> <단서 신설></p> <p>5.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 <u>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u></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나. 제출자 : 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복지기획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05년 1월 1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자활 대상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에 활용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㉑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㉒=㉓+㉑	비 고
	수입㉓	지출㉔	증감 ㉕=㉓-㉔		
915,054	21,165	176,000	△154,835	760,219	

- 재원조성 :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지원기준 :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항 /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8,165	16,168	△8,003	
	임시적 세외수입	13,000	14,000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915,054	898,225	16,829	
수 입 합 계		936,219	928,393	7,826	

- 지출계획

(단위:천원)

세 부	편 성 목	금 액	비 고
자활근로사업 (자활기금)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	6,000	
	자활지원 사업비	10,000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10,000	
	사업장 임대 지원	50,000	
	자활사업자금 지원	100,000	
	기금 예치금	760,219	
지 출 합 계		936,21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수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7,826천원이 증가한 9억 3,621만 9천원이며, 자활대상 탈수급자 보험료지원에 6백만원, 자활 사업비 지원에 1천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에 1천만원, 사업장 임대 지원에 5천만원, 자활사업자금 지원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7억 6,021만 9천원을 예치하려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나. 제출자 : 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설치년도 : 1996년 11월 28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기금사업 집행을 자제하고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하고자 함.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㉑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㉒=㉓+㉑	비 고
	수입㉓	지출㉔	증감 ㉕=㉓-㉔		
811,620	62,173	0	62,173	873,793	

- 재원조성 : 전입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
- 지원기준 :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 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 지원대상 : 김천시 노인 및 단체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항 /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2,173	12,731	△5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811,620	748,889	62,731	
	기타회계 전입금	50,000	50,000	0	
수 입 합 계		873,793	811,620	62,173	

• 지출계획

(단위:천원)

세 부	편 성 목	금 액	비 고
노인복지기금 지원	기금 예치금	873,793	
지 출 합 계		873,79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의 회수, 이자 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217만 3천원이 증가한 8억 7,379만 3천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목표액(1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사업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나. 제출자 : 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 설치년도 : 2014년 12월 31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 복지증진
-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따라 건립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액 확보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㉑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㉒=㉓+㉑	비 고
	수입㉓	지출㉔	증감 ㉕=㉓-㉔		
15,706,089	157,060	0	157,060	15,863,149	

- 재원조성 : 예치금 및 이자 수입
- 지원기준 :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신청 및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건립지역 개발사업,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 지원대상 :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 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항 /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57,060	255,631	△98,5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5,706,089	15,450,458	255,631	
	기타회계전입금	0	0	0	
수 입 합 계		15,863,149	15,706,089	157,060	

• 지출계획

(단위:천원)

세 부	편 성 목	금 액	비 고
보전지출 (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 예치금	15,863,149	
지 출 합 계		15,863,14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전년보다 1억 5,706만원이 증가한 158억 6,314만 9천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 나. 제출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가족행복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 설치목적 : 양성평등의 기반조성,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설치년도 : 2001년 12월 29일(조례제정일 2000년 2월 24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김천시민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 인적자원
개발·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증진사업 지원
-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양성평등기금목표액 10억 달성 시
까지 기금사업 집행을 차제, 지속적
기금 확충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㉑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㉒=㉑+㉓	비 고
	수입㉔	지출㉕	증감 ㉓=㉔-㉕		
831,128	60,308		60,308	891,436	

- 재원조성 :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운영
- 지원대상 : 김천시 양성평등 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항 /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0,308	13,000	△2,69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831,128	767,144	63,984	
	기타회계전입금	50,000	50,000	0	
수 입 합 계		891,436	830,144	61,292	

• 지출계획

(단위:천원)

세 부	편 성 목	금 액	비 고
보전지출(양성평등기금)	예치금	891,436	
지 출 합 계		891,43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6,129만 2천원이 증가한 8억 9,143만 6천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 나. 제출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환경위생과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년도 : 2001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향상
-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
 - 영업장 관리시설 개·보수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 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㉑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㉒=㉑+㉓	비 고
	수입㉔	지출㉕	증감 ㉓=㉔-㉕		
379,894	68,041	123,920	△55,879	324,015	

- 재원조성 : 과징금, 예치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종류	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시설개선자금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일반음식점	· 면적이 적은 순 · 매출액이 적은 순 · 영업기간이 오래된 순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시설 보유	설치비용 80% (150만원 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일 활동 4시간 이상	50,000원

라.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항 /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7,041	6,608	433	
	과징금	50,000	50,000	0	
	그외수입	0	4,000	△4,000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등	11,000	30,000	△19,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379,894	412,206	△32,312	
수 입 합 계		447,935	502,814	△54,879	

• 지출계획

(단위:천원)

세 부	편 성 목	금 액	비 고
식품진흥기금 조성	나트륨저감화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4,000	
	위원회 참석수당	420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	7,000	
	체험하는 위생교육	8,0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500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70,000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도불입금	20,000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0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기금예치금	324,015	
지 출 합 계		447,93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운용 하고 있는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과징금,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5,487만 9천원이 증가한 4억 4,793만 5천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와 외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등에 1억 2,392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01만 5천원을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3.
- 나. 제출자 : 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0. 11.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2.(제21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이유

-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나.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 수거신청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목을 추가하여 투명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영철)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접수수거제에서 스티커제로 변경하고자 스티커의 규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4항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시에는 ‘대형 폐기물스티커’를 구입·부착해야함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표에 7종의 신규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4의4]를 신설하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본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음. 기존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해소와 폐기물 수거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건축폐기물 등”을 “건축폐기물 등의 대형폐기물”로,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마친뒤”를 “동주민센터에서 별표 4의4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종류별	품목	규격별	수수료	종류별	품목	규격별	수수료
가 전 제 품 류	냉장고	500ℓ이상	8,000원	가 구 류 기 타	피아노	모든규격	15,000원
		300ℓ이상	6,000원		장롱	90cm이상(쪽당)	15,000원
		300ℓ미만	4,000원		침대 (매트리스포함)	90cm미만(쪽당)	10,000원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원		매트리스	2인용이상	15,000원
		19인치이상	4,000원		1인용	10,000원	
		19인치미만	3,000원		쇼파	2인용이상	8,000원
	세탁기	8kg이상	4,000원		1인용	5,000원	
		8kg미만	3,000원		3인용	9,000원	
	에어컨	254㎡이상	8,000원		쇼파	2인용	6,000원
		66㎡이상	5,000원		1인용	3,000원	
		66㎡미만	3,000원		책상	양수(대형)	7,000원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원		편수(소형)	4,000원	
		높이1m미만	2,000원		식탁	6인용이상	5,000원
	공기청정기	1m이상	4,000원		6인용미만	4,000원	
		1m미만	2,000원		의자	안락의자	5,000원
	전축 (스피커 포함)	소형	4,000원		목재·철재	2,000원	
		대형	5,000원		문갑	1짝	3,000원
	난로	모든규격	2,000원		텔레비전장식장	모든규격	3,000원
	가습기	모든규격	2,000원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3,000원
	다리미	모든규격	1,000원		문	목문	4,000원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4,000원	샷시문	3,000원			
전화기	모든규격	1,000원	화장대	모든규격	4,000원		
복사기	모든규격	10,000원	책꽂이	모든규격	2,000원		
컴퓨터(본체)	1대당	4,000원	액자	대형(1㎡이상)	2,000원		
컴퓨터(모니터)	모든규격	3,000원	소형(1㎡미만)	1,000원			
컴퓨터(키보드)	모든규격	1,000원	서랍장 (장식장 추가)	5단이상	4,000원		
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	1대당		5단미만	3,000원			
			옷걸이	가로·세로형	4,000원		
비디오, 청소기, 정수기, 탈수기, 팩스밀리, 선풍기, 쌀통, 녹즙기, 배기후드	1대당		평상	목재	6,000원		
			철재	4,000원			
			형광등류	장식용	3,000원		
				일반용	2,000원		
			벽시계	대형(1m이상)	5,000원		
				중형(1m미만)	3,000원		
				소형(0.5m이하)	2,000원		
			보일러	기름가스보일러	10,000원		
				연탄보일러	5,000원		
			이불	모든규격(장당)	2,000원		

종류별	품목	규격별	수수료	종류별	품목	규격별	수수료	
생 활 용 품	밥상	4인용이상	3,000원	캐비닛	모든규격	4,000원	40kg 1마대당 3,000원	
		4인용미만	2,000원					
	싱크대	폭1m이상(짜당)	5,000원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원
		폭1m미만(짜당)	4,000원			3단이하		2,000원
	싱크찬장	2칸	3,000원		카펫	1㎡당		1,000원
		1칸	2,000원		장판	1㎡당		2,000원
	기름탱크	2드럼이상	5,000원		스티로폼·목재류	80kg1마대당		2,000원
		2드럼미만	4,000원		인형·장난감류	20kg		2,000원
	변기	좌변기(소형)	5,000원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원
		양변기	10,000원		전기담요	3인용기준		3,000원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원		항아리	모든규격		2,000원
	장식장	모든규격	4,000원		화분(폭또는 높이)	대형(50cm)이상		2,000원
	욕조	모든규격	5,000원			소형(50cm)미만		1,000원
	드럼통	개당	1,000원		재봉틀	모든규격		3,000원
	물탱크(FRP)	5드럼이상	15,000원		정화조	10인용이상		15,000원
		5드럼미만	10,000원		10인용미만	10,000원		
	가방류	모든규격	1,000원		깨진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			
	쌀통	모든규격	2,000원					
	보행기·유모차· 유아카시트	모든규격	2,000원					
	수족관(어항)	5㎡이상	15,000원					
2㎡이상		10,000원						
2㎡미만		8,000원						
신발장·진열대	높이1m이상	4,000원						
	높이1m미만	2,000원						
세면대	모든규격	5,000원						
수도호스	10개당	2,000원						
전동안마기	부분용	3,000원						
	전신용	20,000원						
PVC파이프	10kg당	5,000원						
타이어	19인치이상	7,000원						
	19인치미만	4,000원						
소화기	15kg이상	6,000원						
	7~15kg미만	4,000원						
	7kg미만	2,000원						
파렛트	모든규격	2,000원						
자전거	성인용	3,000원						
	어린이용	2,000원						

주)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쓰레기는 유사한 품목 또는 무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시마다 부과·징수함.

[별표 4의4]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설명서(제7조 관련)

 <p>대형 폐기물 수수료만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p> <p>대형폐기물</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수수료: 일천원(W1,000)</p> <p>품 명:</p> <p>배출일자: 20 . . .</p> <p>김 천 시 장</p> <p>“ 지정된 수거일자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대형 폐기물 수수료만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p> <p>대형폐기물</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수수료: 이천원(W2,000)</p> <p>품 명:</p> <p>배출일자: 20 . . .</p> <p>김 천 시 장</p> <p>“ 지정된 수거일자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대형폐기물 수수료</p> <p>납부 필증</p> <p>금 일천원 (W1,000)</p> <p>김 천 시 장</p>	<p>주민센터 보관용 (1,000원)</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성 명: _____</p> <p>전 화: _____</p> <p>주 소: _____</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대형폐기물 수수료</p> <p>납부 필증</p> <p>금 이천원 (W2,000)</p> <p>김 천 시 장</p>	<p>주민센터 보관용 (2,000원)</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성 명: _____</p> <p>전 화: _____</p> <p>주 소: _____</p>
 <p>대형 폐기물 수수료만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p> <p>대형폐기물</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수수료: 삼천원(W3,000)</p> <p>품 명:</p> <p>배출일자: 20 . . .</p> <p>김 천 시 장</p> <p>“ 지정된 수거일자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대형 폐기물 수수료만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p> <p>대형폐기물</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수수료: 오천원(W5,000)</p> <p>품 명:</p> <p>배출일자: 20 . . .</p> <p>김 천 시 장</p> <p>“ 지정된 수거일자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대형폐기물 수수료</p> <p>납부 필증</p> <p>금 삼천원 (W3,000)</p> <p>김 천 시 장</p>	<p>주민센터 보관용 (3,000원)</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성 명: _____</p> <p>전 화: _____</p> <p>주 소: _____</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대형폐기물 수수료</p> <p>납부 필증</p> <p>금 오천원 (W5,000)</p> <p>김 천 시 장</p>	<p>주민센터 보관용 (5,000원)</p> <p>No. 지역명 - 발행번호</p> <p>성 명: _____</p> <p>전 화: _____</p> <p>주 소: _____</p>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기준>

1. 규격
 - 가. 외부지름: 8cm
 - 나. 내부지름: 6.5cm
2. 재질: 접착식 스티커
3. 바탕색상
 - 가. 글자: 검정색
 - 나. 외부원 바탕색: 노란색
 - 다. 내부원 바탕색:
 - 1,000원 : 분홍색
 - 2,000원 : 주황색
 - 3,000원 : 연녹색
 - 5,000원 : 하늘색
 - 10,000원 : 회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③ (생 략)</p> <p>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오염된 스티로폼, <u>건축폐기물</u> 등은 쌀포대나 시멘트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미리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u>동주민센터</u>에 신고를 마친뒤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건축폐기물 등의 대형폐기물</u>----- ----- ----- <u>동주민센터</u>에서 별표 4의4에 따른 <u>대형폐기물스티커</u>를 구입 후 부착하 여 ----.</p> <p>⑤ (현행과 같음)</p>